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6. 1.

네이버(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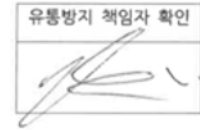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네이버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최수연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네이버 / 약 2.6천만명(2025년 10월-12월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10조 7,377억원 (2025년 연간실적 발표 전이므로, 2024년도 연간 연결 매출 기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서비스통합지원 이정규 이사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2026년도 유통방지계획(2025.12. 네이버주식회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2026 년도 유통방지계획

20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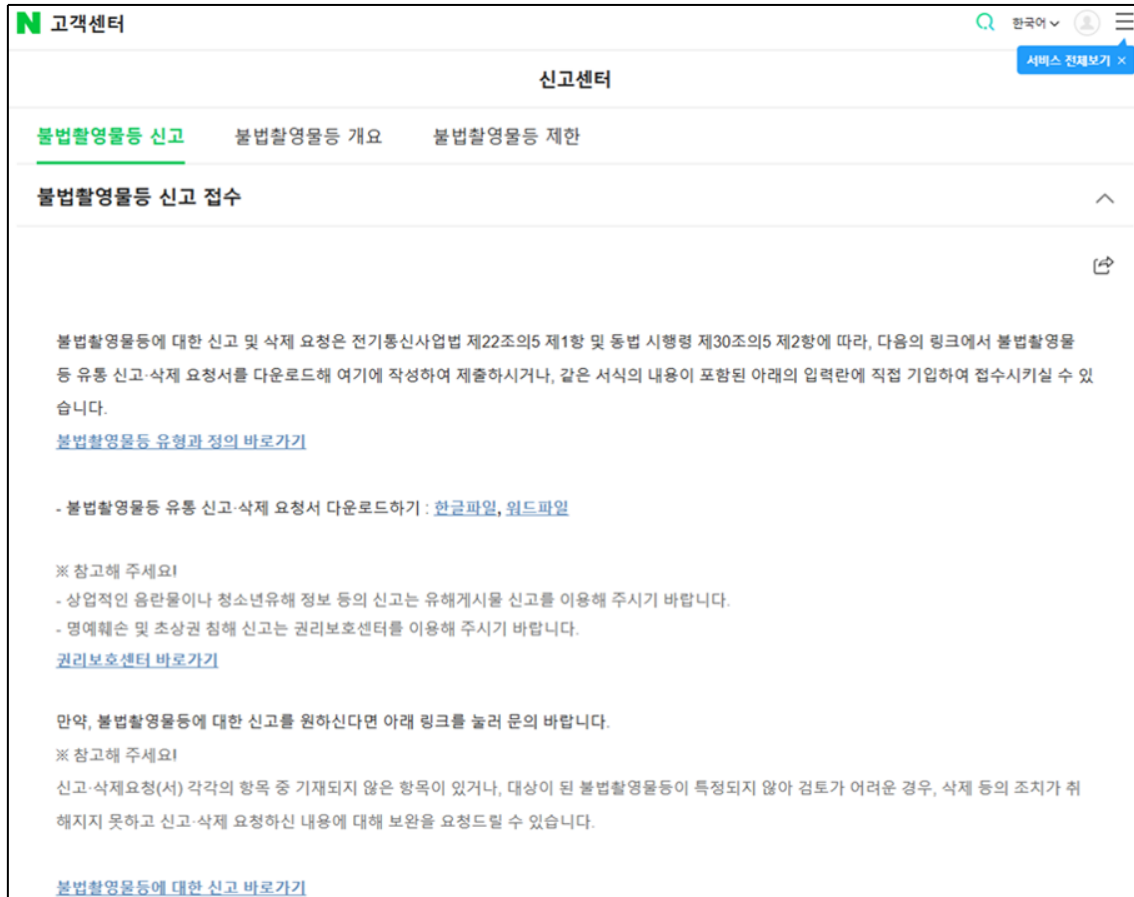
네이버주식회사

적용 시기	추진 계획	현황
2020년 12월	신고센터 내 불법촬영물등 전용 신고 채널 적용	완료
	불법촬영물등 신고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되도록 반영	완료
2021년 7월~10월	불법촬영물등 식별 기술 검토 및 시스템 개발	완료
2021년 11월	네이버 서비스 대상 불법촬영물등 식별/계재제한 기능 적용	완료
2021년 12월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 실서비스 적용 및 불법촬영물등 식별 결과에 대한 로그 기록 보관되도록 반영	완료
	네이버 메인 공지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진행	완료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어 대상 검색결과 승출 제한	완료
2022년 3월	2022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완료
2022년 6월	신고 조치 프로세스 점검 및 이용자 안내 보완	완료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의 오차단 문제 해소 등 안정화	완료
2022년 7월~9월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이행 여부 점검 참여	완료
2022년 12월	2023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완료
2023년 12월	2024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완료
2024년 7월~8월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	완료
2024년 12월	2025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완료
2025년 1월~5월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	완료
2025년 12월	2026년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완료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전용 신고 접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서비스 신고 팝업을 통해서도 전용 신고 접수 채널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신고접수 채널 안내(PC/모바일)] <https://help.naver.com/service/30001/contents>
- PC



- MOBIL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센터
- [온라인 링크] <https://help.naver.com/reportCenter/home.help>
- [전화번호] 1588-3820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촬영물등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노출하고 있으며, 정보 전달이 가능한 뉴스, 어학사전 등의 영역 외에는 검색결과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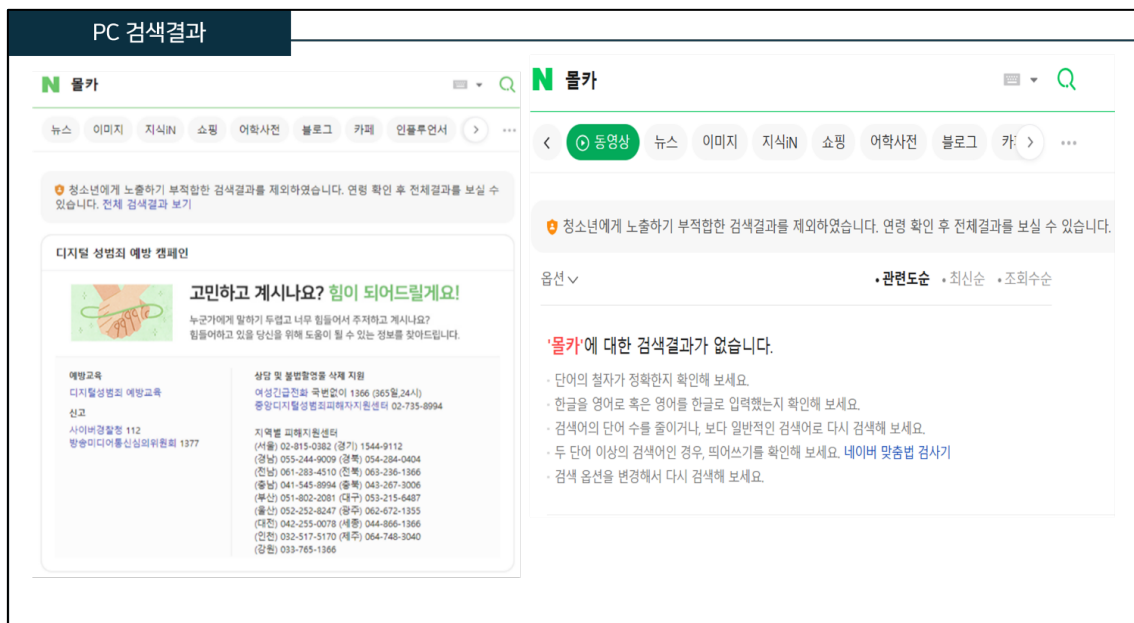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불법촬영물등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검색어에 대해 자동완성어 혹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카페	유	정부기술사용	
2	블로그	유	정부기술사용	
3	밴드	유	정부기술사용	
4	네이버TV	유	정부기술사용	
5	지식iN	유	정부기술사용	
6	빔	유	정부기술사용	
7	네이버게임	유	정부기술사용	
8	치지직(다시보기)	유	정부기술사용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네이버 메인,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 조치 진행
- 네이버 메인 공지(PC)
 - <https://www.naver.com/NOTICE/wwwpc/2470?lang=ko> § ionId=

NAVER 공지사항 로그인 ☰

네이버 서비스의 **신규 및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다이어리 서비스 전체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을 안내 드립니다.
2021.12.06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합작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외부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외부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가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참고: [불법촬영물등신고권](#))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사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성범죄예방정책연구](#) 및 [그린인터넷캠페인](#) 운영 등 법에서 정한 의무 외에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한, 사전조치외부 사업자(네이버)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네이버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네이버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고객센터 공지(PC/모바일)

· <https://help.naver.com/notice/noticeView.help?noticeNo=1028&serviceNo=1&lang=ko>

네이버 고객센터 공지사항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2021.12.06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월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참고: [불법촬영물등신고접수](#))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등 서비스 내 동영상 등록 시 불법촬영물등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

PC	모바일
	



○ 로그기록 보관

- 법령에 따라서, 기술적 조치에 관한 로그기록 3년간 보관(DNA 정보, 게시글 URL, 조치일자)
- 로그기록과 별도로, 신고 접수 기록은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 후 파기하고, 검색 결과 송출 제한 관련한 기록은 키워드 제한의 등록/수정/삭제 일자와 사유 등을 관리 시스템에 기록해 관리함

개인정보수집 동의 (필수)

-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택]생년월일, [선택]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이용목적 :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 보유기간 : 3년, 첨부파일은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캠페인 운영 및 이용자 안내 강화

-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몰카' 등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노출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 신고” 채널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신고” 등 관련 키워드 검색 시 관련 고객센터 도움말을 상단에 노출하고 있으며, 네이버 그린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게시물(불법촬영물등 유포 게시물 포함)에 대한 대응 노력과 신고 채널 등을 알고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Naver homepage with a prominent banner for the 'Digital Sexual Crime Prevention Campaign'. The banner features a green and orange design with the text '고민하고 계시나요?' (Are you worried?).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main sections: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Digital Sexual Crime Prevention Campaign) and '불법촬영물 신고 안내' (Illegal Video Reporting and Assistance). The first section includes a link to the campaign page and a list of related topics. The second section provides a detailed guide on how to report illegal videos, including steps like '신고하기' (Report), '확인' (Check), and '처리' (Process).

- 이용약관 내 게시물 운영정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어떤 비인격화 행위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있음

·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_group.html

[네이버 그린인터넷]

<https://green.naver.com/content-account-home/W0wlpVIp>

<https://green.naver.com/green-safetyguide/91rZdFfF>

The screenshot shows the '이용약관 > 게시물 운영정책 중 청소년 보호' (Terms of Service > Child and Adolescent Protection) section. It begins with a statement: '아동과 청소년의 특별한 보호'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text explains that Naver is committed to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harassment. It lists several types of content that are prohibited, including:

-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으로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공, 광고, 소개 등에 이용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해 보이는 내용의 게시물
-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한 기술적 도구와 인터넷 환경을 매개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등장시켜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물 관련해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그린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주세요.	
--	--

그린인터넷	
그린인터넷 그린 운영방법 그린인터넷 만들기 그린 안전가이드 그린 운영리포트 불법촬영물등 유통시도 방지 2023-07-20 의미 네이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응요청으로 정하는 기간·단계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잠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유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불법촬영물등 불법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 편집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적취급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제거 제언 조서란, 사진·동영상 사업자(네이버)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정 정보를 추출, 방송미디어통신사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정 정보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잠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네이버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정 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정보 추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미디어통신사업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정 정보 DB에 따라 네이버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제거 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린인터넷 그린 운영방법 그린인터넷 만들기 그린 안전가이드 그린 운영리포트 성폭력 예방 2023-07-20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온라인을 사용한 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음란화제에 달한 촬영물에 대한 비통의 주요로는 폭로, 명예, 음란화제 등을 이용한 성적 향상의 불법 담론 등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성적 권속으로 유통되는 행위 외에도, 오픈카트, 성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를 성적취급과 신체를 위한 뒤 성적 취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온라인 상에서 예방됩니다. 온라인 성폭력 유형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한 콘텐츠 • 온라인 채팅 등 디지털 통신을 통해 신체를 담겨 선제된 뒤 성적 거래 및 성적 행위 시도는 행위 수반됩니다. • 온라인 상의 익명성 등을 활용하여, 쉽게 진위를 알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수 대상으로 합니다. • 온라인 상 콘텐츠는 사업자에 적정한 검토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콘텐츠 요구에 응하지 않아 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적취급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촬영을 요구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온라인 그림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폭시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후처리지 아니하고 후처리에 도움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불법촬영물 유통 및 성적 취급의 유형 • 성적 취급을 통해 직접적인 불법촬영물등 온라인 상에 유통된다고 할지라도, 관련 통로 요구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한 유통하는 행위 수반됩니다. • 실제로 영상물 등이 유통되었다면, 각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신고 제도를 통해 제자를 요청하거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제자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음란화제 • 채팅 등을 통해 성적 취급을 유도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여 피폭된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음란을 요구하는 행위 수반됩니다. • 음란화제 대상 중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여 전달하여 음란화제 후처리지,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방 및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거·예방·신고·제거·예방 네이버의 차단 노력 네이버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화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형식을 운영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유통 및 성적 취급의 유형 • 음란화제 대상 중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여 전달하여 음란화제 후처리지,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음란화제 대상 중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여 전달하여 음란화제 후처리지,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24시간 긴급 대응 채널 마련

-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신고 응대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함

네이버는 인터넷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유해게시물 신고 유해 보고하기 신고 보고하기 ARS 상세안내 장예/유해대응센터 전화번호 안내 전화번호 1588-3829 (유료) 0년 네이버 서비스 고객센터 1년 유해게시물, 개인 신상정보 노출 피해 당사자 신고 2년 네이버 서비스 장예 신고 9년 밴드 서비스 관련 문의 확인 자작물 보호 요청 유해 보고하기 요청 보고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 NAVER Corp.		

-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이용제한 정책 마련

-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 신고 접수되어 게시물 삭제 시 즉각적인 이용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이용제한 안내	
---------	--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별지서식]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5.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3	4	-	-	2	3	1	2	2	6	2	3	28
		기관·단체	-	-	-	-	2	-	-	-	-	-	-	-	2
		소계	3	4	-	-	4	3	1	2	2	6	2	3	30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3	3	-	-	4	3	1	2	2	6	2	3	29
		성적 허위영상물	-	3	-	-	-	-	-	-	-	-	-	-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2	-	-	-	-	-	-	-	-	-	2	4
	삭제·접속차단		-	-	-	-	-	-	-	1	-	-	-	-	1
처리 결과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1	-	-	-	-	-	-	-	-	-	-	1
		각하·해당없 음	3	3	-	-	4	2	-	-	-	-	-	-	12
		소계	3	4	-	-	4	2	-	1	-	-	-	-	14
	비고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등의 정의 및 신고 접수 절차에 관한 안내

신고센터

불법촬영물등 신고
불법촬영물등 개요
불법촬영물등 제한

불법촬영물등 유형

^

🔍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 ②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네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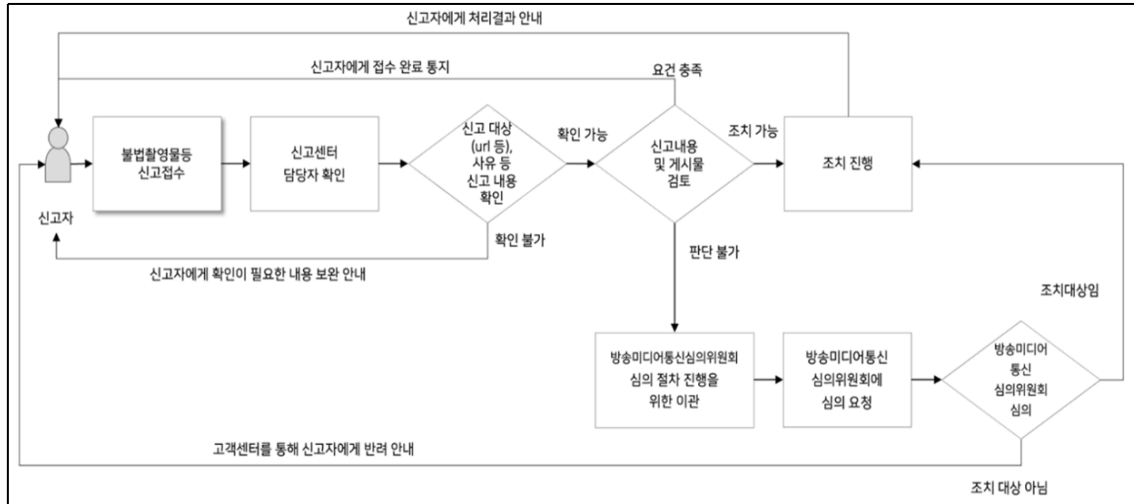
만약,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네이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1항 바로가기](#)

○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 중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등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신고서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 등의 추가 안내를 진행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신고센터 >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상의 유의사항

※ 참고해 주세요!

- 상업적인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 정보 등의 신고는 유해게시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신고는 권리보호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보호센터 바로가기](#)

만약,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신고·삭제요청(서)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삭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내용 중 법으로 규정한 불법촬영물등으로 볼 수 없으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등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가 있거나, 당 사 운영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여타의 불법 정보로써 조치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서 잘못된 신고 창구 선택으로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체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는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촬영물등 신고로 접수될 수 없으니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는 권리보호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유의사항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필수)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이정규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2021-12-31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내부교육	2025-04-1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처리 기준 교육	신고 처리 담당자 1 명	1시간	자체교육
내부교육	2025-04-2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처리 기준 교육	신고 처리 담당자 1 명	1시간	자체교육
내부교육	2025-06-10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처리 기준 리마인드 교육	신고 처리 담당자 15명	30분	자체교육
내부교육	2025-11-1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처리 기준 리마인드 교육	신고 처리 담당자 15명	30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5-11-1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정규 이사	2시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내부교육	2025-11-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처리 기준 교육	신고 처리 담당자 1 명	1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5-12-0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실무담당자)	서비스 운영 담당자	2시간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내부교육	2025-12-2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최근 신고 사례 교육	서비스 운영 담당자 외 20명	30분	자체교육

발급번호 : 2025-il-102-0001

교육 수료 증

성 명 : 이정규

소 속 : 네이버(주)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11. 07. ~ 2025. 11. 17.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11.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번호 : 2025-il-102-0002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박상희

소 속 : 네이버(주)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11. 04. ~ 2025. 12. 01.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12. 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